'95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따른

의회 의견 청취의 건

안 산 시

'95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

의안 번호	

제출년월일 : '95. 3.

제 안 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○ 생활권이 일치되지 않아 주민 불편사항이 많고 수차에 걸쳐 진정 및 건의를 하여 안산시 편입을 요구하는 시흥시 화정동 일부 지역과 시흥시 수암, 장상, 장하동이 '95 자치단체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에 선정되어

○ 주민정서, 역사성, 생활권이 같은 안산시로 편입 조정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코자 함

□ 주요골자

구분	편입되는 지역		편입받는 지역		조정사유
	지 명	규 모	지 명	규 모	
1	시흥시 화정동 일부	3.00㎢ 146세대 415명	안산시	133.39㎢ 156,530세대 462,392명	생활권 불일치
2	시흥시 수암·장상 장하동	7.86㎢ 2,188세대 6,938명	안산시	133.39㎢ 156,530세대 462,392명	생활권 불일치

□ 조정근거

○ 지방자치법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

· 제 1 항 -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.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, 시.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의회의견 청취근거 규정

○ 시.군간 경계조정시는 의회의견 청취후 의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신청하도록 규정

○ 지방자치법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

· 제 2 항 -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.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(이하 "지방의회"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○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조(관계 지방의회)

· 지방자치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 제2항에서 "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"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.

□ 참고사항

○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 결과

o 시흥시 화정동 일부 지역

· 조사일시 : '95. 3.21 (화) 07:00~18:00

· 조사대상 : 146세대(만 20세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1명)

· 조사결과

- 확정세대 : 146세대
- 참여세대 : 117세대 (80.1%)
  - 찬 성 : 114세대 (97.4%)
  - 반 대 : 2세대 (1.7%)
  - 무 효 : 1세대 (0.9%)

o 시흥시 안산동(수암.장상.장하동) 지역

· 조사일시 : '95. 3.21 (화) 07:00~18:00

· 조사대상 : 2,188세대(만 20세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1명)

· 조사결과

- 확정세대 : 2,188세대
- 참여세대 : 1,724세대 (78.9%)
  - 찬 성 : 1,669세대 (96.8%)
  - 반 대 : 41세대 (2.4%)
  - 무 효 : 14세대 (0.8%)

○ 경계조정시 안산시 규모

구 분	면 적 (㎢)	세 대 수	인 구 수 (명)
계	144.25	158,864	469,745
안 산 시	133.39	156,530	462,392
화정동 일부	3.00	146	415
안 산 동	7.86	2,188	6,938

시흥시 화정동 일부 (3.00㎢, 415명) ⇒ 안산시

시흥시 수암, 장상, 장하동 (7.86㎢, 6,938명) ⇒ 안산시

※ 행정동은 안산동임.